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13 선고 2020가소1548614 판결 [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이승형

변론종결 2020. 9. 22.

판결선고 2020. 10. 1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3. 11.부터 2020. 4. 22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○ 예식 3개월 이전 시점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 약관조항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

판사 신성철

별지